#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4. 12. 27.

3. 조치내용

| 제재대상 | 제재내용 |
|---|---|
| 기 관 | 경영유의사항 2건 |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내부통제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체계 제고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은 경영과 관련한 단독 의사결정기구로서 은행의 영업 전반을 감독하는 내부통제위원회(‘Seoul Branch Oversight Committee’)를 설치하고 격월단위로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영업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위원회에서 경영관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결정함에 따라 다양한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 어려울 수 있고 리스크 관련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 파생거래잔액 : (2021년말) 10.5조 → (2022년말) 14.1조 → (2023년말) 24.4조 → (2024.6월말) 34.3조

** 매회 Treasury, Risk and Control, Compliance Risk, Local Regulatory, Engineering, Self-Audit·Oversight 등 약 10개의 안건에 대해 보고 및 승인

한편, 정기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개최가 아닌, 수시로 화상회의 등을 통해 검토 및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사록 등 회의기록이 보관되지 않아 위원회 사후관리가 미흡할 소지가 있다.

* (예) 시장리스크한도(FX Delta Position Limits 등) 관련하여 2022.4월, 2023.10월, 2024.4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여 결정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내부통제위원회 안건의 규모를 고려해 개최 주기를 조정하고, 위원회에서 다루는 각 안건이 독립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 및 결정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분리하는 등 내부통제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해외수탁 관련 지원업무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일선부서의 자체 점검 및 준법감시부의 내부통제 점검('Compliance Monitoring')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영위하는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본점 수탁고객(주로 국내 기관투자자) 관련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 지원업무** 등의 처리 과정에서 업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신인도 하락 등 운영리스크가 내재 되어 있음에도, 은행 차원의 자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현원 인력 기준 34.43% 차지

** 해외 투자 관련 현금흐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전달, 해외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 송금 등

**<조치할 사항>**

해외수탁 관련 지원업무 수행 시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 점검 기준을 마련 및 운영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